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. 2. 27 선고 2017가단1689 판결 [구상금등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2. 27.

판결 선고 2018. 2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172,395원과 이에 대한 2018. 1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부산지방법원이 2007. 10. 25. 선고한 2007가단96801 구상금등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진영현